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721호(號) 1929년(昭和 4) 5월 30일 목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90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(조선국유철도화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]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1929(昭和 4)년 6월15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9(昭和 4)년 5월 30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석탄(石炭)의 항(項) 발역란(發驛欄) 「명천(明川)」을 「상용전(上龍田)」으로 개정(改正)함.